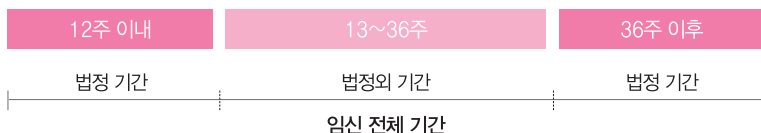




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하세요!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- ❶ **법정기간(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)**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
사업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**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**
(근로기준법 제74조)



근로시간 단축
1일 2시간

임금 삭감
금지



● 사업주 지원혜택 : 월 최고 60만원



월 최고
60만원

- 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
-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
(중소·중견기업에 한함)

※ **대체인력인건비**

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,
인건비의 50% 지원(중소·중견기업 월 60만,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)

[잠깐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 얼마나 되나?

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근로자가 **법정기간(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)**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?

- 근로자 :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
- 사업주 : 전환장려금 **40만원** + 간접노무비(중소·중견기업) **20만원** 수령



고용노동부

- ② **법정기간 이외 기간(임신 12주 초과 ~ 36주 미만)** 임신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 시간에 따라 **임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
 사업주는 **시간선택제 전환제도**를 마련하고, 임신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**단축근무(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)**를 허용하면 **지원금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 **사업주 지원혜택 : 월 최고 60만원**



월 최고
60만원

- **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**
- **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**
(중소·중견기업에 한함)

※ **대체인력인건비**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, 인건비의 50% 지원(중소·중견기업 월 60만,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)

【잠깐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 얼마나 되나?

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근로자가 **법정기간 외 기간(임신 12주 초과~36주 미만)**에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?

- 근로자 :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,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**190만원**(10만원↓) 수령 가능
- 사업주 : 전환장려금 **40만원**(임금보전 후 수령) + 간접노무비(중소·중견기업) **20만원** 수령

지원절차

- 제도 도입 후 시간선택제 전환(사업주·근로자) ➡ 지원금 신청(사업주→고용센터)
 ➡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)
- ※ '16.9.1.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폐지

문의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**1350**

(임신기, 육아휴직, 직장복귀전)

※ **✓ 근로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패키지 활용해보세요.**



임신기
근로시간 단축



출산휴가



육아휴직



전환형
시간선택제



전일제
복귀

● **전환형 시간선택제**

임신, 육아, 학업, 퇴직준비, 건강,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(근로시간 단축)하여 근무하다가 전환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



고용노동부